

다자녀 특별공급(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안내문

■ 서류제출 일정 : 특별공급 - 2023년 12월 07일(목) ~ 12월 09일(토) / 3일간 10:00 ~ 16:00

일반공급 - 2023년 12월 14일(목) ~ 12월 17일(일) / 4일간 10:00 ~ 16:00

■ 서류제출 장소 :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09)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0)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아래 서류의 적격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부적격 의심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은 취소됩니다.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인감증명서상 인감도장 날인 필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 날인)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차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자산 조취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견본주택에 비치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 될 세대원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만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본인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단독세대일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또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만 19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0.(금))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및 세대원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		전세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확인 가능 자료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 : 매각허가결정(경매), 매각결정통지서(공매) / 경 · 공매에서 채권자임이 확인 가능한 여타의 자료 ex)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명 서류	대상자	·청약 시 최하중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배점표	본인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또는배우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배우자)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및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배우자)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인(견본주택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제3차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위임장	본인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용도 : 위임용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상 인감도장 날인 필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 명기)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본 안내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오류 및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